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5345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등기등]

참 조 조 문

민법 제186조, 제263조, 제741조

재 판 경 과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5다15345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4나4800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나A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A 담당변호사 양BA외 2인)

【피고, 상고인】 황CA(소송대리인 변호사 황BB)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1. 27. 선고 2004나48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구로등기소 2000. 7. 7. 접수 제50137호로 경료된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는, 피고가 원고 명의의 서류를 위조하여 경료한 것으로서 원인무효라고 판단한 후, 피고의 항변,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인데, 그 등기만을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해 놓은 것이어서,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는 취지의 항변에 대하여,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위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고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 말소등기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3. 5. 7. 피고 명의로 경료하였던 피고의 1/2지분이전등기에 터잡아 2004. 3. 24.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위 피고 명의의 1/2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이 점만으로는 원인무효인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가 원상회복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인정사실에

기하여 원고는 1993. 5. 7.경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점포 65.48㎡에 대하여 1/2 지분 범위 내에서 이를 사용·수익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동생활이 끝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0년 4월경부터 2004년 4월경까지, 피고가 자신의 1/2 지분 범위를 넘어 위 점포 65.48㎡를 타에 임대하는 방법으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면서, 그 월 임료 상당의 합계 금 167,100,000원의 수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1/2 지분권자인 원고에게 위 수익의 1/2인 금 83,55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취지로 판단한 후, 피고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으로서 금 83,550,000원의 지급을 명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생활비, 자녀의 교육비 등 학자금, 병원 치료비, 집수리비, 세금, 김DA으로부터 원고가 수령한 월세 중 1/2에 관한 금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임료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를 하였다는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심리미진 또는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원고의 퇴직금 중 금 56,000,000원을 보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위 금 56,000,000원을 지급을 명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주심) 강신욱 김영란